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결 위한 제언

정승현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

2007년 정부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제정·시행한 후 꼬박 10년이 됐다.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가축을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유기폐기물을 축산폐수라고 규정하며 규제해왔지만, 가축분뇨법은 그 폐수를 자원으로 만들어 자원순환농업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바람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순환시스템이 현장에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축산업허가제’라는 사상 초유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합법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5일부터 더 이상 축산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로 축산농가들이 사실상 생업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5개월 정도다. 축산업의 붕괴를 촉진할지도 모를 합법화만을 정부가 고집하는 자세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처럼 크나큰 실책을 범하는 것이다. 이제는 축산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농정정신에는 농업이 국민생명 산업이자 식량주권 안보산업이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농민에 대한 애정, 그리고 농촌 회복의 의지가 담겨 있다. 무허가·미신고 축산관련 시설의 적법화 방향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축사규모별 단계적 유예기간 연장보다
가축분뇨의 실질적인
자원화 방안 수립이 우선이다.

가장 먼저 2018년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산관련 시설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축분뇨법의 부칙 제8조 특례조항을 보완해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축사규모별 단계적 유예기간 연장보다 가축분뇨의 실질적인 자원화 방안 수립이 우선이다. 또 고령화된 축산농가의 무허가·미신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 사용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설치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90% 이상이 민간시설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합법화가 불가능한 축산농가에게 대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농·축협이나 배합사료 제조회사가 설치하는 공익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늘어난다면 합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실현하고 가축분뇨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순환 농업의 틀을 확실히 마련하려면 이같이 다양한 정책보완과 예산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일거에 다 이를 수는 없지만 정부의 농정정신이 존중되는 바탕 위에서 무허가·미신고 축산관련 시설의 적법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못할 바도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환경부가 협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농민신문 [2017.10.18]